

사회적 금융 포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금융 제도환경을 공동 조성하고 국내외 지식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금융 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럼의 설립 및 기능) 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, 사회적 금융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과 관련한 회원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금융 포럼(이하 '포럼'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적 금융 제도개선, 정책 모니터링 등 사회적 금융 제도 기반 구축 사업
2. 사회적 금융 서베이, 전망 발표, 성과 공유 등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
3. 사회적 금융 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,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
4. 사회적 금융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포럼, 소모임 및 간담회, 행사 등 지식교류 사업
5. 그 밖에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포럼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사회적 금융을 주 사업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, 정관에 사회적금융 관련 활동을 주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영리조직(재단법인, 마이크로크레딧), 공제조직, 지역금융, 임팩트투자사, P2P금융기관, SIB운영기관으로 한다.

② 사회적 금융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, 공공기관 등의 경우 개인으로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③ 회원의 가입은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, 총회를 통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④ 회원은 구두,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4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정해진 가입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 후, 총회를 통하여 포럼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특별회원은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,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으로, 포럼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회원은 포럼의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④ 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은 각 호와 같다.

1. 포럼의 회비는 연회비를 말하며, 20만원으로 한다.
2. 후원비를 낸 회원의 경우 당해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.
3.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할 경우 회원으로 취득할 수 권리를 상실하며, 3년이상 체납시에는 회원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제명키로 한다.
4. 회비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총회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회원의 권리와 의무, 탈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5조(총회) ① 총회는 포럼의 최고의사결정구조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기획위원의 과반수나 회원의 1/3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1. 기획위원회의 구성
 2. 포럼 운영규약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4. 사업계획의 승인
 5. 기타 중요사항
- ⑤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기획위원회) ① 기획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며, 총회의 추천과 동의로 10명 이내의 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.

- ② 기획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로 진행한다.
- ③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여 쟁점사안은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④ 기획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1.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및 위임받은 사항
 2.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의 승인
 3. 간사단체 구성
 4. 워킹그룹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사항
 5.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포럼의 기능에 관한 사항

제7조(간사단체) ① 간사단체는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질적인 실행조직 역할을 수행하며 기획위원회의 추천과 동의로 3개 단체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간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포럼 및 기획위원회, 워킹그룹 운영 지원
2. 포럼 재원의 운영 관리 및 집행
3. 회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
4. 포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활동 수시
5. 그 밖에 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정기포럼) ① 포럼 주제별 다양한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, 정기포럼은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

② 정기포럼 및 세미나의 구성 및 운영은 기획위원회 참여기관이 합의하는 순번에 따라 주최하는 것으로 한다.

제9조(운영재원) ① 포럼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원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각종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포럼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
③ 포럼의 재원은 간사단체 중 1곳을 지정하여 관리, 운영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럼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.

제11조(변경)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